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주민등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규정한 「주민등록법」 개정('23.12.26. 개정, '24.12.27. 시행)에 따라 발급 절차, 보안 대책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안 제36조, 제40조, 제40조의3, 제60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련 신청 절차 및 방법, 서식 등을 규정하며, (재)발급·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의무에 대해 규정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보안 강화(안 제40조의3, 제42조, 제58조)

- 본인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설정하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 접수 시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등 보안대책에 대해 규정

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 지원(안 제3조, 제36조)

-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IC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집적 회로(IC)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17세 이상 주민 등록증 최초 발급자는 희망하는 경우 IC주민등록증을 무료 발급하도록 규정

라.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안 제41조의3)

-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자의 17세 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 족이 주민등록증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중 “발급”을 “발급 및 법 제27조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담하여야 한다”를 “부담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 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하 “IC주민등록증 이라한다, 이하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중 “주민등록증을 이미”를 “주민등록증(IC주민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하 “주민등록증등”이라한다)을 이미”로, “주민등록증을 회수한 후 주민등록증을”을 “주민등록증등을 회수 또는 사용불능 처리한 후”로 한다.

제36조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이때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전단에 따른 신청자의 본인 여부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로, “이장”을 “통장·이장”으로,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를 “직계혈족이”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3항 후단에 따라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주민등록증의”를 “주민등록증등의”로, “주민등록증을”을 “주민등록증등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주민등록증에 의한”을 “주민등록증등에 의한”으로, “주민등록증 확”을 “주민등록증등 확”으로, “주민등록증에 따”를 “주민등록증등에 따”로 한다.

제4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때,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제3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40조의3 및 제4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

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

· 군 · 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밝
힌 후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
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
임을 밝힌 후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
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제7항에 따라
IC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이동통신단말장치 유
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

기 위해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3.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41조의3(주민등록증 교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본인임을 소명하고 확인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42조의 제목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을 “(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포함한다)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등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

제58조의 제목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을 “(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으로 한다.

제5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제60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1년)

제60조의2제1항제12호 중 “법 제24조”를 “법 제24조, 제24조의2”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증등”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 다) 중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를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3호의3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5항, 제36조제6항, 제36조제7항, 제36조제4항, 제41조의3,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29호서식 다)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 재등록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다가구주택 명칭		동 층 호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전입자 확인 (서명 또는 인)	전입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1				
2				
3				
4				

※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는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 전 세대주 확인	※ 전입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입자(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또는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전(前)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전입 사유 (※주된1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2조제1항 및 제32조의 2제1항에 따라 ([]전입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세대주와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현재 사는 곳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유의사항

1. 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 재등록 신고는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합니다.
2.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됩니다.)
3.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4.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5. 거짓 전입 및 무단 전출을 하면 신고한 최종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될 수 있고, '거주불명 등록' 후 1년 내에 실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으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6.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7.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라 인구 이동 통계 작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고,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8.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1.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세대주를 포함해 세대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입하면서 전(前)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합니다.
5.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6. '신고인 또는 세대주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 또는 세대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7. '전입자 연락처'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하며, 본인의 연락처 기재를 희망하지 않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인) 후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항에 대한 전입자 본인 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연락처 기입이 필요하며, 수집된 연락처는 전입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폐기됩니다.
8.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 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공무상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이를 작성하지 않아 우편물 등이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 주소(동, 층, 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 전입 [] 재등록신고서(☐ 재외국민 ☐ 해외체류자)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 번호		신고일			
		년	월	일	
전에 살던 곳	구분	[] 세대 모두 이동 [] 세대주 포함 일부 이동 [] 세대주 미포함 일부 이동			
	세대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 (연락처)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사는 곳 (이사한 곳)	구분	[] 세대 구성 [] 다른 세대로 편입 [] 세대 합가(두 세대주가 하나의 세대 구성)			
	세대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주소			주민등록번호	
	다가구주택 명칭		※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다가구주택인 경우 작성 (예: 무궁화빌라, 1동 1층 2호)		
		동		층 호	

* 신고 대상자 (총 명)

전입자 (재등록자)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영주 국가 (지역, 재외국민만 해당)	체류 자격 (재외국민만 해당)	전입자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전입자 확인 (서명 또는 인)
1						
2						
3						
4						

※ '전입자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는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합니다.

전입 사유 (※주된가지)	[] 직업 (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 교육 (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 가족 (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 주거 환경 (교통, 문화·편의 시설 등)
	[] 주택 (주택 구입, 계약 만료, 집세, 재개발 등)	[] 자연 환경 (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 그 밖의 사유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 전입 [] 재등록)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재외국민(또는 해외체류자) 본인과의 관계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사본) 2.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해외체류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

210mm×297mm[백상지(150g/㎡)]

※ 위임장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위임장

「주민등록법」 제11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제4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관할 행정청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거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직접 주민등록신고 대상자의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재외국민 본인 또는 해외체류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이민 출국 또는 현지이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은 현 거주지에서 재등록신고 또는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17세 이상 재외국민은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해외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관리주소로 해외체류신고하였거나 해외체류신고한 주소지와 현 거주지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하며, 17세 이상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전입한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주소지 변경 정리를 해야 합니다(주민등록증 소지자만 해당합니다).
-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위임을 받고,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재외국민(해외체류자) 본인이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외국민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또는 해외체류자의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 거짓 전입, 무단 전출을 하면 최종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전입 사유 칸은 「통계법」에 따른 인구 이동 통계의 작성을 위한 자료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비밀이 보호되며, 전입 사유 칸의 내용은 통계 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 우편물 전입지 전송(배달) 및 전입지 주소 정보 제공에 동의할 경우 우정사업본부가 전입신고 3일후부터 3개월까지 전입지로 우편물을 전송(배달)하거나, 현재 전입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업체 중 전입지로 우편물 발송을 희망하는 업체에 전입지 주소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 우편물 발송 업체 명단과 업체 추가·변경 사실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www.koreapost.go.kr)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의하신 후 언제든지 우정사업본부 누리집이나 가까운 우체국에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됩니다.
- 전입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과 전(前)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전입자의 확인을 받고,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고, 그 법정대리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전입자[전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합니다]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 조사로 갈음할 수 있고, 신고인이 전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면 그 전입자의 신분증명서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에는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작성합니다.
- '전입지 또는 재등록지'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에는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 '영주 국가' 칸에는 영주 하고 있는 국가명과 함께 () 안에 지역의 명칭을 작성해야 합니다.
- 체류 자격은 영주, 가족 체류, 유학, 취업, 투자, 상용(商用), 공무, 기타(자세한 내용) 중에서 주된 사유 하나를 적습니다.
- '신고인 또는 세대주 연락처'는 도로명주소 등 신고인 또는 세대주에게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도우려는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습니다. 연락처가 바뀔 때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입자 연락처'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시에만 작성하며, 본인의 연락처 기재를 희망하지 않는 전입자의 경우 전입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자 확인(서명 또는 인) 후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 정부24를 통한 전입신고 시 전입신고 사항에 대한 전입자 본인확인(문자메시지 링크 전송)을 위해 전입자 연락처 기입이 필요하며, 수집된 연락처는 전입자 본인 확인이 완료된 후 폐기됩니다.
- 전입 주소가 다가구주택인 경우에 '주택명칭·층·호수'는 주민등록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하는 사람만 작성하면 되고, 공법상 주소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고, 이를 작성하지 않아 송달되지 않는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다만,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상세주소(동·층·호)가 부여된 경우 공법상 주소로 전입신고 가능합니다.

우편물 전입지 전송(전입신고 3일 후부터 3개월) 서비스 신청서 및 개인 정보 제공 동의서

이 서비스는 전에 살던 주소지로 배달되던 우편물을 전입신고한 주소로 배달하는 서비스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의 개인 정보가 우체국으로 제공되므로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전입지 전송 서비스 신청 후 새로운 곳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 기존에 신청한 건은 자동으로 삭제되며, 직전 주소지에서 새로 전입신고한 주소지로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수료 등은 우편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공 항목: 동의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

○ 우편물 전송을 받으려 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성명 작성:

○ 신청인 전화번호: ☎ - - (휴대전화: - -)

[]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고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신고서 접수증

* 신고서 및 학령 아동 접수증은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년(한정)후견인 (서명 또는 인)

※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성년(한정)후견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관계 공무원 방문 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수수료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없음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2.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7.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9.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형법」 제225조).
10.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암호화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며 개인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11. 본인 소명을 위해 배우자, 직계혈족이 동행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혈족 여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작성 방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3. ‘통장·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 번호	접수일	처리 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락처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IC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 IC 비용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재발급 사유	☐ 분실 ☐ 훼손 ☐ 성명 변경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소 변경 간 부족 ☐ 용모(사진)변경 ☐ 지문 재등록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 재외국민 주민등록 ☐ IC주민등록증으로 변경 ☐ 그 밖의 사유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서비스	
	본인의 주민등록증 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집적회로(IC) 칩 포함 ☐ 신청 ☐ 미신청 ※ IC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 신청 ☐ 미신청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방문 ☐ * 수령을 희망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또는 출장소의 명칭을 적습니다. ☐ 등기우편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 신청 (휴대전화번호:) ☐ 미신청
점자 스티커		☐ 신청 ☐ 미신청
등기우편 수령 주소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우)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년(한정) 후견인 (서명 또는 인)

※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성년(한정) 후견인의 서명을 받습니다.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신청인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시·도) (시·군·구)	연락처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 서류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5,000원 ※ IC 포함 5,000원 추가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전산시스템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3.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암호화하여 전자적으로 저장하며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4.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재외동포청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6.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7.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6개월이 지나도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으면 주민등록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주민등록증이 이송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8. 주민등록증 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일의 업무 종료시간을 기준으로 확인된 신청인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입니다.
9. 수수료를 내는 경우
 -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 라. IC가 포함된 주민등록증으로 재발급하는 경우(IC 비용: 5,000원 추가)
10.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에서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본인 소명을 위해 배우자, 직계혈족이 동행한 경우 배우자 및 직계혈족 여부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통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 내용	[] 발급	[] 재발급
신 청 인	성명(한글)	성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재발급 사유	[]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되어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주민등록증이 훼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그 내용을 알아보기 어려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워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설치된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이나 훼손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4조의2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첨부서류	주민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않는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증과 신청서를 관계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본인확인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3.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3. (생략) ② (생략) 제3조(경비의 부담)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u>부담</u> 하여야 한다. 1. 2. (생략) <u><신설></u> ② (생략)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 ③ (생략) ④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정정되거나 법 제7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결정을 통지받은 사람이 <u>주민등록증을 이미 발급받</u>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경비의 부담) ① ----- ----- ----- ----- 부담 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u>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이하 “IC주민등록증 이라한다, 이하같다)을 발급 또는 재발급하는 경우</u>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등록번호의 정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u>주민등록증(IC주민등록증</u>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은 사람 또는 공고된 사람은 그 통지서 또는 공고문에 적힌 발급신청기간 내에 시·군·자치구의 관계공무원에게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그 공무원 앞에서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지문을 찍거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지문을 찍어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③ -----

----- 하며,

이때 IC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를 제시하거나 주민등록지의 이장이 확인을 하거나 17세 이상의 동일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동행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본인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러우면 그 확인에 필요한 사항에만 한정하여 물어볼 수 있다.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은 제출한 사진 또는 전자적 파일형태의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전단에 따른 신청자의 본인 여부 소명은 국가·지방자치단체 -----

----- 통장·이장 -----

----- 직계혈족 -----

-----.

⑤·⑥ (생략)

<신설>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등록증이 아닌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생략)

4. 그 밖에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생략)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을 할 때에는 접수된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에 별표 1의 주민등록증 확인 고무인을 찍은 후 주민등록증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기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⑧ 제3항 후단에 따라 IC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39조(주민등록증에 의한 확인의 예외) ① -----
----- 주민등록증-----

-----.

1. (현행과 같음)

2. 주민등록증등의 -----
----- 주민등록증을 -----

3. (현행과 같음)

4. ----- 주민등록증-----

② (현행과 같음)

③ -----
----- 주민등록증에 의한 -----

----- 주민등록증확----- 주민등록증에 따-----

재하고, 관계 공무원이 서명·
날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을
대리하여 다른 사람이 민원서류
등을 제출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적고 관
계 공무원이 서명·날인해야 한
다.

④ (생략)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법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
2호서식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해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7. (생략)

<신설>

④ ~ ⑧ (생략)

-----.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 ①

-----.
이때, IC주민등록
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7. (현행과 같음)

8.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
으로 변경하는 경우

④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0조의3(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 법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군·자치구의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 받지 못하여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사진 1장을 제출하고 본인임을 밝힌 후 별지 제30호서식 또는 별지 제32호서식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또는 제40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5항 및 제40조제7항에 따라 IC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사람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말
한다. 이하 같다)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통신단말장
치 중 1대에만 발급 또는 재발
급받을 수 있다.

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암호화하기 위해 이동통신단말
장치에 설치·사용하는 전자적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
다.

⑥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
서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의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
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
우

<신 설>

2. 법 제2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
우

3. 제40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
까지의 사유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은 경우

4.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이동
통신단말장치를 변경한 경우

5. 그 밖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모바일 주
민등록증의 발급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안전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
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외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
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
한다.

제41조의3(주민등록증 교부)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
록증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계 공무
원에게 본인임을 소명하고 확인

	<u>받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에게 주민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본인에게 교부해야 한다.</u>
제42조(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등) ①·② (생략) <u><신 설></u>	제42조(주민등록증등의 분실신고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모바일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저장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포함한다)을 분실한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방식에 따라 분실신고를 하거나 분실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u> ④ <u>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실신고를 접수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u>
제58조(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화자동응답시스템, 전자민원창구 또는 주민등록증 진위확	제58조(주민등록증등의 진위 확인) ① ----- ----- ----- ----- -----

인시스템 등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그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 ⑤ (생략)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 4의3. (생략)

<신 설>

5. ~ 24. (생략)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
관(제2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
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
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
보(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

----- . 다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신원확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운영기반을 이용할 수 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0조(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보존) -----

1.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5년(전산자료로 따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1년)

5. ~ 24. (현행과 같음)

제60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① -----

호, 제14호, 제14호의2 및 제16호만 해당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u>법 제24조</u> 및 제27조에 따른 <u>주민등록증</u> 의 발급·재발급에 관한 사무	12. <u>법 제24조, 제24조의2</u> --- <u>주민등록증등</u> ----- -----
12의2. ~ 17. (생략)	12의2. ~ 1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주민과	
연 락 처	(044) 205 - 3143